

의안번호	제 419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

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6년 6월 29일

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	419
--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6년 6월 29일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청년창업 활성화를 통한 청년 실업 해소 및 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해 도내 청년창업의 체계적 육성·지원 기관인 베이스캠프를 구축하고,
- 민간기관의 전문 창업육성 프로그램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베이스 캠프 운영관리를 「충청북도 일자리창출 촉진 지원 조례」 및 「충청북도 사무의 위탁조례」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대상 :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

나. 추진계획

- 수탁기간 : 2016. 7월 ~ 2017. 12월 (1년 6개월)
- 수탁기관 : 창업기업 육성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
- 수탁방법 : 공모선정
- 위탁사무 :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
 - 예비·초기 창업자 창업공간 제공 및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
 -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 “자문기구” 및 “협의회” 운영
 - 기타 도내 예비·초기 청년창업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다. 향후계획

-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민간위탁 공고 : '16. 7월
-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 : '16. 8월
- 민간위탁 기관 심의·선정 : '16. 8월
-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 : '16. 8월

3. 참고사항

- 가.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민간위탁 추진계획 : 붙임
- 나. 관계 법령 : 붙임



- 예비 · 초기 창업자 체계적 육성 · 지원을 위한 -

청년창업 베이스캠프 민간위탁 추진계획



- 예비 · 초기 창업자 체계적 육성 · 지원을 위한 -

청년창업 베이스캠프 민간위탁 추진계획

- 도내 우수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· 초기 청년창업자를 체계적으로 육성 · 지원하기 위해 청년창업 베이스캠프를 구축하고,
- 베이스캠프의 운영관리를 민간기관의 전문 기업육성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함

① 관련근거

-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제5조 및 제10조
 -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
-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
 - 위탁대상 사무 및 도의회 동의 규정

② 그간 추진경과

- 베이스캠프 예산확보 : 300백만원(도비) ※ '16. 제1회 추경
- 도내 창업지원기관 전문가 의견수렴
 - 충북대 · 교통대 창업지원단장 (박태형 · 곽윤식 교수)
 - 우수아이템 보유 창업가를 발굴 ·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필요
 - 충북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장 최순식
 - 창업초기 기초 단계부터 체계적인 창업 프로그램 운영 필요
- 운영사례 조사
 - (판교) 스타트업 캠퍼스 ➔ 운영비 연20억 / 상시근무자 26명
 - 창업→성장→해외진출 지원 / 국제변호사, 변리사, 투자전문가 상주
 - (경기) G-베이스캠프, 운영비 5억 / (경북) 청년CEO육성, 운영비 5억
 - 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 창업자들의 개방형 창업공간 및 사업화 지원
 - 지역 유망 청년창업가의 창업공간 및 창업활동비 지원
 - 도 보육센터(16) 및 충북TP : 창업지원 프로그램운영, 시제품제작 지원 등

○ 청년창업 유관기관 전문가 방향설정 간담회 (정무부지사 주재)

- 도 최초 청년창업 지원 시책으로 의미 있고, 긍정적 측면이 많음
- 다양한 방법의 창업지원 체계 구축 및 창업 성공율 제고 필요
- 창업전문가 협의회 구성, 주기적 성과보고 및 발전방안 논의

③ 운영방향

○ 창업성공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해 청년창업벨트 구축

○ 예비·초기 창업자 체계적 육성·지원을 위해 초기창업 지원기관 구축

→ 민간기관 전문 창업육성 프로그램 활용



④ 추진계획

① 사업개요

- 사업명 : 청년창업 베이스캠프
- 사업비 : 300백만원 (도비100%)
- 사업기간 : 2016. 7월 ~ 12월 (6개월)
- 추진방법 : 민간위탁 (공개모집)
- 설치장소 : 위탁기관 내 별도장소 (50평형 정도)
- 지원규모 : 25개 예비 · 초기 청년창업자

② 세부 운영계획

○ 예비창업자 모집 : 공개모집 + 도내 창업 유관기관 추천 병행

- 도내 창업지원기관 사업 신청자 및 아이템경진대회 우수자 집중 홍보

○ 주요지원 내역

- 창업자 창업(공동)공간 제공 : 25개 예비 · 초기 창업자
- 창업지원(개별 600만원) : 사업화등록, 특허출원, 정보활동비 등
- 창업전문가 배치(상주) : 예비창업자 애로사항 즉시 해결 지원 등
 - 창업경험자 및 창업보육센터 보육매니저 등 유경험자 채용(1명)
- 프로그램 운영 : 전문가 그룹컨설팅, 창업실무교육, 네트워킹데이 등
- 창업 전문가(변호사, 노무사 등)로 구성된 “창업지원 자문기구” 운영
- 창업 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 구성 · 운영(2개월 주기)

○ 운영방법

- 6개월 과정 시범운영 후 17년도부터 10개월 과정으로 확대운영
- 2개월 주기 성과보고회 개최 : 성과 및 노력정도 미흡시 퇴소
- 결원 발생(퇴소자 등)시 대기자 및 재공고 추가 선발

5 향후일정

○ 베이스캠프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: '16. 7월

○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민간위탁 공고 : '16. 7월

○ 수탁기관선정심의원회 구성 및 심의 : '16. 8월

- 구성인원 : 7명 (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)

- 심의 · 선정

- 심의사항 :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, 적격성 등 종합평가

- 운영사항 : 현장(선택) 및 서면평가 후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

○ 위 · 수탁 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 : '16. 8월

관 계 법령 발 췌

■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(제5조, 제10조)

제5조(일자리 창출 사업)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
1. 여성, 노인, 장애인, 장기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
2. 청년층 등 생산적·경제적 일자리 창출사업
3.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
4.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

제10조(사무의 위탁) 도지사는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」에 따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■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(제4조)

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

② 도지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민간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.